

공동주택 등 건물관리업을 위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안내



제도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제재 대상

아래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은 휴게시설 미설치 시 1천5백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 2 7개 취약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을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① 전화상담원, ② 돌봄서비스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 아파트경비원, ⑦ 건물경비원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예시

공동주택관리를 하는 주택관리업자로 아파트와 위탁계약 하여 본사 a(15명)를 두고 아파트 b(15명), 아파트 c(20명)에서 위탁관리업무를 하는 경우

-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아파트 단위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 조직운영이 각 아파트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본사에서 수행하는 경우

▶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0명으로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제재대상 사업주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 경우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본사(a) 및 아파트(b, c)에 각각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21의2)

1. 크기

- 휴게시설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 휴식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

2. 위치

- 근로자 이용에 편리하고 가까운 곳. 공동휴게시설은 왕복 이동 소요시간이 휴식시간 20% 이내 위치
- 다음 모든 장소와 떨어져 있어야 함 : ① 화재·폭발위험, ② 유해물질 취급, ③ 분진 또는 소음 노출

3. 온도

냉난방 기능 (적정한 온도 18℃ ~ 28℃)

4. 습도

습도 조절기능 (적정한 습도 50% ~ 55%)

5. 조명

조명 조절 기능 (적정한 밝기 100럭스~200럭스)

6.

창문 등 환기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8.

마실 수 있는 물 또는 식수설비

9.

외부에 휴게시설 표지 부착

10.

청소·관리 등 담당자 지정

11.

목적 외 사용 금지



Q.1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인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 경비 및 청소업체 사업주 등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은 누구인지?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하여 공동주택이 자치 관리일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업주로 볼 수 있고, 위탁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위탁을 받은 주택관리업자, 경비청소업체가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함

Q.2

임대아파트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자는 누구인지?

휴게시설의 설치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도급계약(명칭 무관)이 체결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수급인 모두에게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음
- 따라서 임대 사업자(도급인)와 주택관리업자(수급인) 모두가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함

Q.3

공공주택 사업장으로 100세대, 1개동 위탁관리 운영할 때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곳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공동주택이 위탁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장소에서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위탁회사의 본사 및 위탁관리중인 각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전체인원이 20인 이상 (아파트 경비원 등 7개 직종 2명 이상인 경우 10인 이상)인 경우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함

Q.4

공동주택에서 지하 휴게실을 이용하지 않고 각 경비초소를 휴게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법 위반인지?

업무공간인 경비실은 원칙적으로 휴게시설로 볼 수 없음. 단 물리적인 공간 부족으로 경비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휴식시간이 업무와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만 휴게시설로 인정이 가능함

Q.5

공동주택에서 휴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파트 관리비로 집행해도 되는지?

공동주택에서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아파트 관리비로 집행해도 되는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입주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QR코드의 휴게시설 설치 A to Z 해설가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해설가이드 다운로드 가능)

해설가이드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1.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가이드 게시'(2022.9.5.)